

조선시대 왕실의료의 사회통제적 기능

서울대 신 동 원

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을 보면 거의 전 시기에 걸쳐 內醫院이나 典醫監 등의 왕실의료기관의 기능이 왕실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왕과 그의 친족들 뿐만 아니라, 품계가 높은 대신과 그의 가족들의 진료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經國大典에는 “왕의 친족이나 2품이상의 관리가 병이 위급할 때 醫司에다 없는 약을 청구하면 承政院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보내준다”(禮曹)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의원이 관여하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었다. 그렇지만 대신의 품계와 공신의 공훈 정도에 따라서 파견되는 의원의 급이나 약물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왕실의료의 왕실 바깥까지 미쳤던 범위와 빈도, 그리고 의료의 차등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왕실의 의료의 대신들과 공유되어 있었다는 점은 왕과 대신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녔다. 즉, 신하들은 良質인 왕실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왕은 왕실의료의 일부를 대신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왕과 대신 사이에는 더욱 굳건한 결속력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서 醫는 왕에 대한 대신의 사회적 유대감(social bonding)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신들에 대한 왕실의료의 효과적인 사회통제적 기능은 철저하게 왕실의료의 일반 민간의료에 대한 질적 우월성에 바탕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시대의 의학교육과 약물경제학을 고찰하면 이같은 질적 차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전문적 의원의 양성 및 발탁을 거의 독점하였으며, 內醫院의 御醫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에서 나지 않는 귀하고 값비싼 많은 약재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오직 公貿易의 형태로만 이루어졌으며, 이들 약재의 대부분이 왕실에서 독점되었다. 따라서 일반 민간에서는 이들 약재를 달리 구할 방도가 없었다. 이러한 왕실 내의 높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귀한 약의 독점은 왕실의료의 대신들에 대해 사회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전제였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의료의 사회통제적 기능 중에서 왕과 대신 사이의 관계만을 살펴 보았다. 이 밖에도 정부의 對民의 의료, 양반 또는 사대부가 향촌 사회에서 인민들에 대해 베푸는 의료들 또한 왕-대신 사이에 존재했던 의료의 사회적 통제 기능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도 역시 의학적 지식의 차별성과 귀한 약재의 소유/무소유에 근거해서 의료의 사회적 통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 각 경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조선사회에서의 醫의 존재형태와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割算書」의 출판

國士館大 下平和夫

16세기말 일본에 온 유럽인이 일본인의 계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당시 사용된 주판의 교과서는 확실치 않지만, 현존하는 最古의 교과서의 하나로서 「割算書」(정확한 서명은 알 수 없지만)가 전해지고 있다. 명하지는 않지만 이 책(毛利重能 著)의 初版이 현